

직업교육혁신센터 규정

2014. 04. 01. 최초제정
 2016. 04. 01. 전면개정
 2020. 01. 21. 부분개정
 2021. 09. 01. 부분개정
 2021. 11. 01. 부분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 직업교육혁신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0.01.21., 2021.09.01.>

제2조(위치) 본 센터는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 내에 둔다.

제3조(기능) 본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21.09.01.>

1. 역량기반 교육과정 도입 및 추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<개정 2020.01.21.>
2.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업무<개정 2020.01.21.>
3. 역량기반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<개정 2020.01.21.>
4.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지원<개정 2020.01.21.>
5. 역량기반의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<개정 2020.01.21.>
6.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지원 업무<개정 2020.01.21.>
7. 역량기반 교육과정 교육품질관리 관련 업무<개정 2020.01.21.>
8. 삭제 <2020.01.21.>
9. 교육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
10. 교수-학습능력 개발 및 교수학습방법개선지원<신설 2021.09.01.>
11. 학생의 학습능력신장 및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학습코칭, 다양한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제공<신설 2021.09.01.>
12. 기초학습능력진단 및 향상프로그램 지원<신설 2021.09.01.>
13. 교수(강사 제외)의 수업개선 및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<신설 2021.09.01.>
14. 교수(강사 제외)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, 세미나, 워크숍 개최<신설 2021.09.01.>
15. 전체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<신설 2021.09.01.>
16. e-Learning 콘텐츠개발 지원 및 관리<신설 2021.09.01.>
17. 스마트 LMS의 운영 및 관리<신설 2021.09.01.>
18. 어학연수, 해외현장실습, 해외인턴십, 해외취업 등에 관한 사항<신설 2021.11.01.>
19. 외국어 특별강좌 개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<신설 2021.11.01.>
20. 외국어 특별강좌의 강사 위촉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<신설 2021.11.01.>
21. 내·외부기관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<신설 2021.11.01.>
22. 교내/외 영어경시대회에 관한 사항<신설 2021.11.01.>
23. 외국어 공식시험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<신설 2021.11.01.>

24. 기타 본 센터의 목적수행에 부합되는 대내외적 사업의 계획과 실적 평가

제2장 조직

제4조(조직)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, 전담직원, 팀원을 둘 수 있으며, 센터 운영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직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위원회

제5조(직업교육혁신평가위원회) ①본 센터의 전반적인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며,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20.01.21. 2021.09.01.>

1.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·개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<개정 2020.01.21.>
2.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운영, 교육품질관리 계획,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<개정 2020.01.21.>
3. 센터 운영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4. 센터의 운영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<개정 2021.09.01.>
5. 기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

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한다.

③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⑤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위원회는 필요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위원장이 선임한다.

제6조 삭제<2020.01.21.>

제7조(자문위원) ①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로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외부 인사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기타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의 경우 규정개정일 기준 센터 조직, 위원회, 기능에 대해서는 임명일 및 시행 기준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의 경우 규정 개정일 기준 센터 조직, 위원회, 기능에 대하여 임명일 및 시행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